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부 령 : 제576호
- 공포일자 : 2007. 8. 24
- 담당부처 : 법무담당관실 (02-2110-8143)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채권입찰제가 인근지역의 주택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의 기준을 조정하고,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투명화를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점제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안 제2조제14호 신설, 제11조의2 및 제12조)

- ①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항목과 소유주택수 등의 감점항목을 적용하여 산정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가점제를 도입하되, 가점제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유주택자(有住宅者)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75퍼센트는 가점제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추첨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여 가점제와 추첨제를 같이 시행하도록 함.
- ③ 가점제의 시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의 개선(안 제2조제13호마목, 제16조제3항)

- ① 일부 사업주체가 미계약 주택을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추후에 공급하면서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음.
- ② 사업주체가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한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첨자로 봄.
-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공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터넷을 활용한 입주자모집의 대상지역 확대(안 제8조제11항)

- ①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데, 청약을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 접수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극심한 교통혼잡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②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청약과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인터넷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상한액의 하향조정(안 제12조의2제3항)

- ①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되, 채권입찰제의 시행이 인근 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음.

- ② 현재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90퍼센트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함.

마.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안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 ① 현재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수차례 특별공급을 받아 전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②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등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하여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함.

◎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부 령 : 제 419호
- 공포일자 : 2007. 9. 14
- 담당부처 : 법무담당관실(02-2110-5226)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www.mocie.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시 도시가스사업자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즉시 통보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455호, 2007. 5. 17. 공포, 2007. 8. 18. 시행)됨에 따라,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 그 사업소의 설치공사의 시공감리필증을 받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등의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알려야 하는 가스사고를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부 령 : 제 277호
- 공포일자 : 2007. 9. 14
- 담당부처 : 법무담당관실(02-750-2168)
- 전문참고 : 정보통신부(www.mic.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324호, 2007. 3. 29. 공포, 2007. 9. 30. 시행, 법률 제8425호, 2007. 5. 11. 공포, 2007.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신망의 광대역화, 역무간 융합 등 통신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현재의 열거식 역무분류제도를 서비스별 구분과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조정하며,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의 개선(안 제3조)

- ① 현재의 세분화된 역무 열거방식은 역무해석의 다름이 잦고,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억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②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3개 역무로 통합하는 등 기간통신역무 분류제도를 개선함.
- ③ 허가 단위의 광역화로 시장진입이 쉬워짐에 따라 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요금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불통화권 이용자의 권익보호 강화(안 별표 2)

- ① 현재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통화권에 대한 발행기준이나 발행총액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증보험 금액을 뚜렷이 초과한 선불통화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함.
- ② 통신사업자가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을 등록기준 자본금의 5분의 1 이상에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으로 증액함.
- ③ 선불통화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의3, 제9조의4, 제22조 및 별지 제3호의9 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 제 20277호
- 공포일자 : 2007. 9. 18
- 담당부처 : 통신방송정책총괄팀(02-750-1313)
- 전문참고 : 정보통신부(www.mic.go.k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19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법률 제8324호, 2007. 3. 29. 공포, 2007. 9. 30. 시행 및 법률 제8425호, 2007. 5. 11. 공포, 2007. 11. 12. 시행)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정보통신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01

현재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직원이 정보통신감리원(상주)으로 파견되어 두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①?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등에 적용되는 겸직허용, 고용의무 완화,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에 정보통신감리원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2)

02

토지대장의 번지가 서로 다른 2개 건물에 12명의 고객이 사용하는 계약전력을 합산하면 111kW인 경우,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①? 전기사업법 제2조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저압으로 수전 하는 75kW(제조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설비는 100kW이상)이상의 전기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합니다.

동일구내 또는 동일건물 내에 있는 전기설비는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산용량이 75kW 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6. 03)

03

- 가. 건축물 등 신축공사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기존 건축물 등의 변경공사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다. 만약 위 “가 또는 나”를 점유자로 볼 수 있다면, 원도급자(공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도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라. 만약 위 “가, 나, 다”를 점유자로 볼 수 있다면 선임신고서류로 공사를 도급받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공사도급계약서 등)를 징구하여야 되는지 여부



?? ◦ 문의 가)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시 공사현장은 울타리 등으로 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 건축물 또는 전기설비의 시공자가 동 건설현장을 직접 점유하는 것이 인정되고, 또한 공사의 도급에 관한 계약서상에도 건축물 또는 전기설비 등의 완공 후 인도날짜 등이 명시되어 있는바, 시공자를 점유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나)에 대하여

변경공사시에도 전기설비의 시공자가 시공현장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점유자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설비의 원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변경공사현장에 거주 또는 근무등을 하고 있다면 시공자를 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문의 다)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의거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안되며, 다만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의 하수급인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수급하며, 이 경우에도 원수급인의 지도·조정을 받으므로 전기설비의 점유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문의 라)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73조의2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해임한 자는 전기사업법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해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전기사업자나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 증빙을 위하여 귀 협회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등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27)

지난 9월호 46p 내용이 잘못 게재되어 수정하여 다시 알려드립니다.